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일정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장소	신청방법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2021년 5월 12일(수)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PC : www.applyhome.co.kr ② 스마트폰 앱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 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구 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계약 기간
일 정	2021년 5월 24(월)	2021년 5월 26일(수) ~ 6월 2일(수)	2021년 6월 4일(금) ~ 6월 7일(월)
방 법	개별조회 (청약 Home 로그인 후 개별조회)	방문 접수 (10:00 ~ 16:00)	
장 소	한국부동산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홈' www.applyhome.co.kr	당사 견본주택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0-5 번지)	

■ 주택형별 대상 세대

구 분	75	84A	84B	합계
국가유공자	4	3	1	8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3	1	8
중소기업 근로자	4	3	1	8
장기복무제대군인	2	1	0	3
북한이탈자	1	1	0	2
장애인	4	4	2	10
소 계	19	15	5	39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청약 통장	청약통장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구 분	창원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신청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추천 기관	기관추천	해당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 경남동부보훈지청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애인	경남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경남동부 보훈지청		
북한 이탈자	하나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 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특별공급 1회 사용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형저가주택'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